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
- 나. 의안번호: 제1414호
- 다. 제출일자: 2023. 10. 16.
- 라. 회부일자: 2023. 10. 23.

2. 제 안 사 유

- 가. 한강 수상 대중교통 사업인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 마련
- 나. 대중교통으로서 공공성 확보,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다.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 및 운영 활성화로 깨끗한 한강 환경 조성에 이바지

3. 주 요 내 용

- 가. 리버버스 운영 관련 시장과 사업자의 권한과 의무
- 나.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 다.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라. 재정지원 등 주요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 시정요구,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및 환수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정의),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친환경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등)

나. 예산조치: 연도별 운항결손액 재정지원금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

다. 협의 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원안동의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위원 자격요건의 구체성, 객관성 높일 것)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원안 동의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검토서 제출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3. 8. 24.~9. 13.) 결과: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한강 수상 대중교통 사업인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대중교통으로서 공공성 확보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깨끗한 한강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입법 취지 및 필요성

- 서울시 행정구역의 6.6%에 해당하는 면적(수역과 둔치 39.8km²)을 차지하는데도 올림픽대로 등 제방도로로 인한 단절, 대중교통과의 연결 곤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강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이 편리한 한강’¹⁾이라는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서울을 관통하는 고속화도로인 올림픽대로 등의 교통 체증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육상교통 혼잡 문제를 개선하길 원하는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리버버스’라는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됨.

2) 세부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리버버스 운영 및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제1조) 및 정의(제2조), 리버버스의 노선 및 운영

1) 이동이 편리한 한강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4대 핵심전략 중 ‘이동성 확장’ 과제

(제5조), 재정지원(제8조),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16조), 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제21조), 업무협약(제22조) 등 총 24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조(제목)	내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목적: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 리버버스, 운항결손액, 환경친화적 선박 등 관련 용어 정의
제5조(리버버스의 노선 및 운영)	- 리버버스 운항노선과 운항시간 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8조(재정의 지원)	- 운항결손액 등 사업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및 소유자 선박 매입 자금 등 지원 사항 규정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사항 규정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리버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사항 규정
제21조(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	- 사업자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사항 규정
제22조(업무협약)	-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사항 규정

- 세부적으로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을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활성화’로 제시하고 있음.

이는 하나의 조례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2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 조례의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리버버스를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의미인바,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고 조례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혼선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에서는 ‘리버버스’를 대중교통수단²⁾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제시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환경친화적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며,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리버버스의 노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다만, 이용 수요나 선착장 설치 위치 등은 현재 진행 중인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가 나와야 확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이용 특성과 한강공원의 현장 여건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운항노선 및 시간 등을 결정해야 할 것임.

- 안 제8조는 운항결손액(지출금이 수입금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을 통해 금액 및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에 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다만, 아직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한 리버버스의 향후 운영에 관한 상황을 가정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며, 재정 지원에 관한 협약서 작성은 귀책 사유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던 선례 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임.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

-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전환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한강에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하나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 제10조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이나 개조뿐만 아니라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인 「친환경선박법」에 명시된 사항³⁾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기자재의 종류나 범위가 모호하고 특히 기자재 설치나 교체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안 제13조는 시장 등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 의무를 규정하여 공공이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한 점은 타당할 것임.

다만, 한강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다수가 민간 물량인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한편, 안 제10조부터 제13조 중 법령의 약칭을 ‘친환경선박법 시행령’과 같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바, 정비가 필요할 것임.

3) 참조 : 「친환경선박법」 제10조 등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리버버스 재정지원,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연료공급시설의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및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동 위원회는 운항결손액 관련 재정지원부터 환경친화적 선박 매입 등의 지원까지 예산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야 하기에 감사담당관에서 권고한 내용(위원 자격 요건의 구체성, 객관성 높일 것)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할 것임.

- 안 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사업자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지원 조사, 시정 요구, 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의 시민 서비스 증진 및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22조는 업무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과 함께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이 제출되었음.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조례안 처리 이후에 동의안이 제출되는 것이 절차상 타당했을 것임.

- 전반적으로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육상 교통수단의 한계(교통 체증 등)로 인해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동 수단인 리버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

다만, 본 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 또한 정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